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12
------------	-----

2023. 12. 19.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12. 19. 이동호 의원 등 7명

나. 상정의결

- 제31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2023. 12. 19.)
“원안가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 대표발의자 이동호 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그 개편 내용을 현행 조례와 공포후 시행전 조례에 각각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미래전략기획단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으로 함(안 부칙 제2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의 경과조치)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한 날부터는 미래전략기획단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으로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구경남)

- 2023. 11. 3.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제출되어 2023. 12. 6.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현재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3. 9. 27 시행된 조례 제1847호에 따라 제9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날부터는 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미래전략기획단 상임위 소관을 제9대 후반기 의장·부의장선거전날까지는 복지도시위원회로, 선거날부터는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사항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한편,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제1749호)와 공포 후 시행 전(제1847호) 조례를 하나의 조례안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와 공포 후 시행 전 조례의 규정내용이 각각 상이함으로 그 소관사항도 각각 규정하려는 것임. 다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표출방식이 법제처의 법령 표출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부칙(경과조치)으로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재 서울 자치구의회 중 한시기구(행정4급) 소관 위원회는 다음과 같음.

자치구	명칭	하부기구	소관위원회	위원회 소관 사항
서초구	미래비전기획단 - 도시인프라조성과 - 도시디자인과	2과5팀 (행정4급)	재정건설위원회	- 기획재정국 소관 - 도시관리국 소관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 <u>미래비전기획단</u> 소관 - 보건소 소관
송파구	전략개발기획단 - 전략개발과 - 미래공간개발과	2과6팀 (행정4급)	도시건설위원회	- 도시현대화국 소관 - 교통환경국 소관 -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 <u>전략개발기획단</u> 소관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상임위원회별 소관)제1항제3호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을 규정한 것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으로는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보건소가 해당되는 바 신설된 미래전략기획단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 안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시행 전(조례 제1847호)의 시행일을 고려하여 단서조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임.
- 안 부칙 제2조(미래전략기획단 소관의 경과조치)에서는 제9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전일까지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정하는 현행 조례의 조문이 필요하나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운영상의 한계로 인하여 명시적인 경과조치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임.

○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2023. 12. 6.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의 하나로 미래전략기획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9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날을 기준으로 선거 전날까지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선거날부터는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정비하려는 것인 바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해 보임.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